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094
------	------

2023. 9. 15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4일, 김규남 의원(찬성자 29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】

-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9.1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규남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은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정하여 이 지역 내의 건설 공사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러나 동 조례 제19조제5항은 상위법인 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·추상적 규제를 두고 있음.
- 이에 제19조제5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·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규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·추상적 조항을 삭제함(안 제19조제5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위임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여 외부지역까지도 보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여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·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나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한 규정 삭제(안 제19조제5항)

- 개정안은 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위임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제19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·④ (생략) ⑤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·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.	제19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·④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현행조례(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)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지정문화재에 대해 보존지역 지정 범위를 정하고 있음.

-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: 보호구역의 외곽경계 100미터 이내
 - 시지정문화재의 경우: 보호구역의 외곽경계 50미터 이내

- 또한, 현행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
 - ▶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거나, ▶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▶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있는 지역 등에 대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인지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.
- 더구나, 건설공사에 대한 인·허가를 행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 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- 다만,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정은 「문화재보호법」(제12조)을 근거로 하며, 문화재는 국가문화재(유형, 무형, 기념물, 민속문화재)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지정문화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.

「문화재보호법」

제12조(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) 건설공사로 인하여 **문화재가** 훼손, 멸실 또는 수몰(水沒)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.

-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하에 상위법인 「문화재보호법」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.
- 현행조례 제정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서 건설공사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례가 전무해 사문화된 조항으로,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규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9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김규남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
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
소영철, 송경택, 윤영희,
윤종복, 이상욱, 이종환,
최민규, 한·신, 허·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9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은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정하여 이 지역 내의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동 조례 제19조제5항은 상위법인 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·추상적 규제를 두고 있음.
- 이에 제19조제5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·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규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·추상적 조항을 삭제함(안 제19조제5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재보호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<u>건설공사에 대한 인가·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9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